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변호사 甲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014년 2월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2002년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변호사이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파산관재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 없다. 또한, 세법 해석상으로도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물음 1)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5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은 2016년 5월 1일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7억 9천만원은 2017년 2월 1일에, 잔금 1천만원은 도시개발사업 승인 후 15일 내에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乙에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乙은 2016년 6월 1일 X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다. (단, 甲과 乙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지급 후 甲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상환하고, 乙이 해약할 경우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6년 5월 20일에 甲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와 乙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수입시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9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X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2월 1일 乙이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 이에 甲은 2016년 6월 1일을 X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시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2018년 2월 1일을 X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았다. 각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근거를 설명하고, 이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논하시오. (15점)

물음 3) 위 사례에서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甲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甲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고 가정한다. 甲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6점)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주식회사 A는 2005년 3월 5일 X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A는 건설교통부장관과 2005년 10월 5일 X 고속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되, 30년 간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추정통행료 수입의 최소 90%를 보장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X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2007년 12월 5일 운영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B는 A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A는 2007년 12월 23일 B가 보유한 A 발행주식 가액 중 50억원을 유상감자하였다. 이후 A는 2008년 1월 1일 유상감자한 금액을 20년 만기, 고정금리 연 20%의 이자를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약정을 체결하였다. A의 자본구조 변경 후 B의 주식 지분율은 60%였으며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0%로 낮추어 A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 절감 등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A와 B의 후순위차입약정을 2007년 12월 20일 승인하였다.

A는 2017년 12월 31일 B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비용 10억원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8년 3월 30일 신고 및 납부하였다. A의 관할 세무서는 2017 사업연도 A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년 8월 10일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하였다.

(단, 2017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5%, 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2%이고, 해당 차입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A가 B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이자율 또는 B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이자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물음 1)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과 판례상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는 ① 일반적인 시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과 ② 시가 입증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시된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에 있어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시오. (8점)

물음 4)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계산과정은 불필요하다.) (8점)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이 2016년 5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X 상장주식을 4억원에 취득한 후 2018년 2월 9일 甲의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다. X 주식의 양도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은 6억원,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은 8억원이다.

<사례 2>

거주자 丙은 2015년 9월 25일 Y 비상장주식을 4억원에 취득한 후 2018년 2월 2일 丙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丁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Y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을 6억원으로 평가하고,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2018년 7월 3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사례 1>에서 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Y 주식의 고가양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하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불필요하다.) (10점)